

# 건설공사 표준품셈 (1)

경제기획원

## 제 1 장 설계일반 방침서

### 1. 목적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질향상과 공사비의 적정산정 및 시공 현대화를 위하여 각종사업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방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 2. 적용범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반공사에 이를 적용한다.

### 3. 적용방법

가. 설계에 적용할 표준품셈은 이 방침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사용한다.

나. 표준품셈 및 이 방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발주하는 각부 장관의 책임하에 표준품셈 및 이 방침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다. 과학적이고 명확한 사실과 실험 또는 연구 결과치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에 따르지 아니하고 별도로 특수 품셈을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4. 특정기계사용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기계 사용이 사전에 확인되었을 때는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수량의 계산

가. 수량은 C. G. S단위를 사용한다.

나.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다.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5입한다.

라.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마.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단, 계산은 1회 곱하거나 나눌 때마다 소수 2 자리까지로 한다.

바.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 공식에 의하는 외에 삼사법(三斜法)이나 삼사유치법(三斜誘致法) 또는 프라니미터로 한다.

다만 프라니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사. 입적계산은 의사공식(擬似公式)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입적은 양단 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평균법으로 고쳐서 산출할 수도 있다.

아.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입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2) 보울트의 구멍

(3)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4) 이음줄눈의 간격

(5) 포장공중의 1개소당 0.1m<sup>2</sup> 이하의 구조물 자리

(6) 강(綱) 구조물의 리벳 구멍

(7) 철근콘크리트 중의 철근

(8) 조약돌 중의 말뚝 입적 및 책동목(柵洞木)

(9)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자.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 침하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 6. 돌붙임의 틈메우기들

벉쌓기(張石積)의 틈메우기(目潰)들은 고인돌량의 0.15%까지 계상할 수 있다.

### 7. 재료의 할증율

공사용 재료의 할증율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 이내로 한다.

가.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최고값)

| 종 류      | 정치석(%) | 기 타 % |
|----------|--------|-------|
| 시멘트      | 2      | 3     |
| 잔골재, 채움재 | 10     | 12    |
| 굵은 골재    | 3      | 5     |
| 아스팔트     | 2      | 3     |
| 석 분      | 2      | 3     |
| 혼화제      | 2      | —     |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나. 노상 및 노반재료

| 종 류          | 할증율(%) |
|--------------|--------|
| 모래           | 6      |
| 부순돌, 자갈, 막자갈 | 4      |
| 석분           | 0      |
| 점질토          | 6      |

다. 해상작업의 경우는 다음표의 값 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사

| 종 류          | 할증율% | 비 고                  |
|--------------|------|----------------------|
| 치환모래 (置換砂)   | 20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대한 할증율 |
| 깔모래 (敷砂)     | 30   |                      |
| 사항용모래 (砂抗用砂) | 20   |                      |
| 압입모래 (壓入砂)   | 40   |                      |

(2) 사석

| 지 반<br>사석두께<br>종류 | 보 통 지 반 |       | 모래치환지반 |       | 연 약 지 반 |       |
|-------------------|---------|-------|--------|-------|---------|-------|
|                   | 2m 이하   | 2m 이상 | 2m 이하  | 2m 이상 | 2m 이하   | 2m 이상 |
| 기초사석              | 25%     | 20%   | 30%    | 25%   | 50%     | 40%   |
| 피복석 (被覆石)         | 15      | 15    | 15     | 15    | 20      | 20    |
| 덧채움사석             | 20      | 20    | 20     | 20    | 25      | 25    |

(3) 속채움

| 종 류 | 할증율(%) | 비 고  |
|-----|--------|--|
| 모 래 | 10     | 케이슨 또는 세라블록 등의 속채움시 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 재는 제외 |
| 사 석 | 10     |  |

라. 강재(鋼材)

| 종 류     | 할증율(%) |
|---------|--------|
| 철 근     | 5      |
| 이형철근    | 3      |
| 보 울 트   | 5      |
| 강 관     | 10     |
| 형강 (形鋼) | 5~10   |
| 봉강 (棒鋼) | 5      |
| 철골 (鐵骨) | 10     |

마. 목재, 유리, 도료(塗料)

| 종 류                      | 할증율(%) |
|--------------------------|--------|
| 목 재<br>관 재<br>합 판<br>텍 스 | 5~10   |
|                          | 10~20  |
|                          | 3      |
|                          | 5      |
| 유 리                      | 5      |
| 페 인 트                    | 2      |

거푸집 및 동바리공이나 가건물 또는 플룸셈에 할증율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전선, 케이블

| 종 류  | 할증율(%) |
|------|--------|
| 전 선  | 5      |
| 후로우트 | 10     |
| 케이블  | 20     |

8. 축제 성토공의 더듬기(餘盛)

중요하지 않은 축제성토공에 있어서 각 층을 다 짐하지 아니하고 시공할 경우의 더듬기 높이는 다음과 같다.

| 더듬기 높이 구분       | 3m 미만           | 3~6m           | 6~9m           | 9~12m          |
|-----------------|-----------------|----------------|----------------|----------------|
| 일 반 토 사 사력 (砂礫) | 높이의10%<br>높이의5% | 높이의8%<br>높이의4% | 높이의7%<br>높이의3% | 높이의6%<br>높이의2% |

9. 수중 공사

가. 수중공사에 있어서 기초 고르기의 여유 폭 은 일반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 구 분      | 한쪽여유폭(m) | 양쪽여유폭 |
|----------|----------|-------|
| 케이슨      | 1.0      | 2.0   |
| L칭 또는 방괴 | 0.5      | 1.0   |
| 현장콘크리트타설 | 0.5      | 1.0   |

나. 이형블록 공극율은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 종 류     | 레트라포드(%) | 삼공원주(三供圓柱)(%) |
|---------|----------|---------------|
| 난적 (亂積) | 50       | 50            |
| 층적 (層積) | 50       | 50            |

10. 가설공사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 11. 토취장

가. 토취장은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가급적 취토보상 가격만을 지불토록 하여 후일 필요치 않은 토지의 매입은 피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은 잘 정리하여 때를 입혀 사방을 하여야 한다.

다.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 12. 석산 및 골재원

가. 석산 및 골재원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암을 발파하여 깨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때에 발생하는 파쇄된 돌이 10~40%가 발생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여 유용이 가능한 것은 유용 사용토록해야 한다.

이 때에 파쇄된 돌은 무대(無代)로 하고 선별이 필요할 경우에는 선별 채집비와 운반비를 계상한다.

다. 잡석을 부순돌(碎石)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라.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마.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 13. 지하지반의 추정

가. 지하지반은 시추공(boring)에 의하여 추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량이 소량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공사와 불가피하여 시추공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설계하고 지하지반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공중 확인된 상태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 14. 토량환산계수의 적용

토공에 있어 토질을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토량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 15. 주요자재

가. 주요자재(시멘트, 철근, 보이라) 및 기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특히 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 성질에 따라서 관급 또는 도급자 부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다만 소량이거나 긴급사업 등으로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시멘트와 철근 등을 관급으로 하지 아니 하여도 좋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조달청이 사실상 관급할 수 없거나 적기 공급이 어려울 때.

②. 공사현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급함이 국가에 불리할 때

③. 관급자재의 총액이 1,000,000원 미만인때

다.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KS규격품을 우선한다.

### 16. 시멘트 공대 및 공드람과 발생재의 처리

가. 시멘트 공대 및 공드람과 기타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 품 명          | 공제율  | 비 고          |
|--------------|------|--------------|
| 시멘트 공대       | 90%  | 공대의 시중 도매가격  |
| 공드람관         | 100% | 공드람관의 시중도매가격 |
| 사용고재 및 기타발생재 | 발생량  | 시중가격         |

나. 시공 도중 발생되었거나 수량의 변동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 17. 공구 손료 및 잡재료

가.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잡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한다.

나.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의 공구손료 및 잡재료를 계상코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1위 대가표 비고란에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전기 공사의 공구손율은 노력비의 3%까지 가산할 수 있다.

라. 전기 공사의 소모품 및 잡품 할증율은 재료비(관급 및 도급)의 0.4%까지 가산할 수 있다.

마. 전기 공사의 소모품 및 잡품이라함은 설계 내역상 표시가 곤란한 사소한 소모 잡품을 말한다.

### 18. 소운반의 운반거리

소운반의 운반거리는 20m 이내를 말하며,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 계상한다.

**19. 사용료**

가. 계약에 따른 특허 사용료와 기술자 등에 대한 비용은 계상할 수 있다.

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용수 및 전기사용료 등은 실정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20.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양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 거푸집의 사용 회수 결정은 단일 공사 및 계약단위별로 한다. 따라서 설계서 작성시마다 사용 회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시공관리 시험비**

가. 시공관리를 위하여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비는 계상한다.

나. 품질관리시험에 대한 기준은 별첨 품질관리 기준과 같다.

**22. 재료시험의 결과 이용**

설계는 재료 시험에 의하여 재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십장**

가. 십장의 계상은 작업 조건을 감안하여 다음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현장 작업 조건                             | 인 원 수      |
|--------------------------------------|------------|
| 작업장이 평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 | 25~50인에 1인 |
| 작업장이 협소하고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  | 15~25인에 1인 |
| 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              | 5~15인에 1인  |

나. 작업조건에 따라 특이한 조로서 편성되어 작업할 때에는 각 작업조에 따라 십장 1인을 계상할 수 있다. (예; 잠수 작업조 등)

**24. 유해 위험 작업**

유해 위험작업 시간외 야간 또는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제4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수 있다.

**25 야간 작업**

PERT / CPM공정에 의하거나 공사 성질상 부득이 야간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작업능률 저하를 20%까지 계상할 수 있다.

**26.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인적조사 또는 기계적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한다.

**27. 운반로 개설 및 유지 보수**

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 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 속도가 증가되므로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인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28. 수송비 또는 회항비(回航費)**

건설용 기계의 공사 현장까지의 왕복 수송 또는 회항에 필요한 제경비는 건설용 기계가 소재한다고 추정되는 가장 가까운 장소로부터의 수송비와 공인된 수속비(手續費) 및 인건비 등을 합산한 경비를 말하며 이를 계상할 수 있다.

**29. 분해 조립비**

분해 및 조립을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30. 건설기계의 잡비율**

건설기계의 잡비율은 기계손로(소모품 제외)의 10% 이내로 한다.

**31. 운전사의 구분**

| 구 분         | 해 당 기 계  |
|-------------|--|
| 중기조종원       | 블로우저, 쇼벨계굴착기계, 트랙터, 모우터 그레이더, 모우터스크레이퍼, 로올러, 스프레터, 피니셔, 크레인 트랙, 트럭크레인, 콘크리트 파쇄기, 노면 청소차, 개설차, 덤프터, 드릴, 램머(100kg이상), 콤팩터(100kg 이상), 케이로우더, 기관차, 크레셔, 플랜트, 덤프트럭(8 ton 이상), 대형정치식 기계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
| 운 전 사       | 8 ton 미만의 덤프트럭, 살수차, 트랙터, 리프트트럭기타공업용트럭   |
| 기계운전사 및 조종원 | 소형의 콤팩트, 양수기, 믹서, 우인 치, 향타기, 그라우트 펌프, 벨트콘베이어, 발전기 기타 소형기계  |

**32. 운전원의 노임**

건설기계 운전원의 노임은 상시고용일 경우에

한하여 월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33.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재무부 회계 1210~4503 (1969. 9. 18)에 의하여 별도 설계상에 명시한다.

### 34. 설계도면의 제도

설계도면작성을 위한 제도는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과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에 따라야 한다.

### 35. 설계서의 작성

가. 설계서의 작성 순서 및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순위 원 설계서 변경설계서

| 순위 | 원 설계서           | 순위 | 변경설계서       |
|----|-----------------|----|-------------|
| 1  | 표지              | 1  | 표지          |
| 2  | 목차              | 2  | 목차          |
| 3  | 설계설명서           | 3  | 변경이유서       |
| 4  | 일반시방서           |    | 이하 원설계와 같음. |
| 5  | 특별시방서           |    |             |
| 6  | 예정공정표           |    |             |
| 7  | 동원인원 계획표        |    |             |
| 8  | 예산서 (내역서)       |    |             |
| 9  | 일위 대가표          |    |             |
| 10 | 자재표             |    |             |
| 11 | 중기 사용료 및 잡비 계산서 |    |             |
| 12 | 수량계산서 (토적표)     |    |             |
| 13 | 설계도면            |    |             |
| 14 | 설계지침서 (원본)      |    |             |
| 15 | 산출기초 (원본)       |    |             |

나. 설계서의 크기는 16절지로 하고 횡으로 누워서 사용한다.

다. 변경설계서 작성시의 원 설계는 적색, 변경 설계는 청색 또는 흑색으로 하고 동일한 상부에 원설계 (적색), 하부에 변경설계를 기재한다.

라. 설계변경도면은 변경부분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다만 식별이 곤란할 때는 별도로 작성한다.

## 품질관리 기준

### 1. 선정 시험

#### 가. 콘크리트

| 종 별 | 시험 종류   | 시험 기준 및 규격                                       | 시험 빈도   | 비 고                     |
|-----|---------|--|---|-------------------------|
| 시멘트 | 일반품질 시험 | KS L 5101<br>KS L 5112<br>KS L 5120<br>KS L 5121 | (1) 입하 때마다 제조 회사의 시험표를 제출한다.<br>(2) 3개월 이상 저장하였던 저 습기와 접촉될 우려가 있을 때 | 공사 설계물을 위한 사전 조사상 필요할 때 |

| 종 별            | 시험 종류                   | 시험 기준 및 규격             | 시험 빈도  | 비 고                   |
|----------------|-------------------------|------------------------|--|-----------------------|
| 골 재            |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 KS F 2504              | (1) 공사개시 전에 1회                                   |                       |
|                |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 KS F 2503              | (2) 생산지가 바뀔 때                                    |                       |
|                | 체 가 림                   | KS F 2502              | (3) 품질의 변화가 있을 때                                 |                       |
|                | 체 통 과                   | KS F 2511              |  |                       |
|                | 단 위 중 량                 | KS F 2505              |  |                       |
|                | 모래의 유기 불순물              | KS F 2510              |  |                       |
|                | 로스안겔스                   | KS F 2508              |  |                       |
| 안 정 성          | KS F 2507               |                        |  |                       |
| 물              | 수 질 시험                  |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음료수는 무방               |
| 혼화제 및 혼화제 배합설계 | 품질 시험                   | 당해제품의 KS               | (1) 입하 때 제조회사의 품질 증명서를 제출한다.<br>(2) 품질의 변화가 있을 때 |                       |
|                | 배합설계                    | 재료가 다른 각 배합            | (1) 재료가 다른 각 배합<br>(2) 필요한 경우                    |                       |
| 플랜트            | 제량기의 원기 검사 및 자동제량장치의 검사 | 믹서 성능의 시험              | 공사개시 전에 1회                                       |                       |
| 철근 및 강재        | 인장 시험                   | KS B 0801<br>KS D 3504 | 제조회사의 시험표 제출.                                    | 시험실의 필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
| P. C 강선        | 인장 강도                   | KS D 7002              | 상  | 동                     |
| P. C 강선        | 항복 강도                   |                        |  |                       |
| P. C 강선        | 노름율                     |                        |  |                       |
| P. C 강선        | 리락세이손                   |                        |  |                       |

### 나. 흙

| 종 별       | 시험 종류     | 시험 기준 및 규격 | 시험 빈도                                 | 비 고                                 |
|-----------|-----------|------------|---------------------------------------|-------------------------------------|
| 토 질       | 흙의 입도     | KS F 2302  | 20,000m <sup>3</sup> 에 1회씩 또는 매 토취장마다 | 도로 및 축제 성토에 적용되며 설계를 위한 시험은 별도로 한다. |
|           | 흙의 액성     | KS F 2303  |                                       |                                     |
|           | 한계        |            |                                       |                                     |
|           | 흙의 소성     | KS F 2304  |                                       |                                     |
|           | 한계        |            |                                       |                                     |
|           | 흙의 비중     | KS F 2308  |                                       |                                     |
| 다짐 시험     | KS F 2312 |            |                                       |                                     |
| 흙의 함수량 시험 | KS F 2306 |            |                                       |                                     |

다. 아스팔트 포장

| 종별   | 시험종류                                     | 시험기준<br>및<br>규격   | 시험빈도   | 비고                           |
|------|--|---|--|------------------------------|
| 아스팔트 | 일반품질시험                                   | KS M 2201<br>KS M 2202<br>KS M 2203                           | (1) 입하시 제조회사<br>의 시험표 제출<br>(2) 품질의 변화가<br>있다고 생각될 때     | 공사 감독 및<br>공사관리시험<br>상 필요할 때 |
| 골재   | 비중및흡수량<br>압축음율<br>체가름<br>No. 200<br>체 통과 | KS F 2503<br>KS F 2504<br>KS F 2508<br>KS F 2502<br>KS F 2511 | (1) 공사개시전 1회<br>(2) 생산지가 바뀔때<br>(3) 품질의 변화가<br>있다고 생각될 때 |                              |

| 종별                     | 시험종류                                  | 시험기준<br>및<br>규격                           | 시험빈도               | 비고                           |
|------------------------|---------------------------------------|---|--------------------|------------------------------|
| 철근<br>및<br>강재          | 인장시험<br>용접 및 개스<br>압접, 이음부<br>의 인장 시험 | KS B 0801<br>KS D 3504<br>및 당해 제품<br>의 KS | KS D 3504규정에<br>따라 |                              |
| P. S<br>강선<br>또는<br>강봉 | 상동(上同)                                | KS D 7002                                 | KS D 7002규정에       | 공사 감독 및<br>공사관리시험<br>상 필요할 때 |

2. 관리 시험

가. 콘크리트

| 종별                              | 시험종류                        | 시험기준<br>및<br>규격        | 시험빈도  | 비고   |
|---------------------------------|-----------------------------|------------------------|---|--|
|                                 | 체가름                         | KS F 2502              | 잔골재 1일 1회 이<br>상<br>굵은골재 1일 1회<br>이상  | 모래의 조립<br>율이 0.2이상<br>변하면 배합<br>을 수정                 |
| 골재                              | 굵은 골재의<br>표면수량              | 가 열 법                  | 강우 강설후 1일 1<br>회 이상   | 변화할때 마<br>다 배합 수정                                    |
|                                 | 잔골재의 표<br>면수량               | KS F 2509              | 1일 1회이상   | 상동 단, 습윤<br>보정 장치에<br>따라도 좋음                         |
| 균<br>양<br>콘<br>크<br>리<br>트      | 슬럼프<br>공기량                  | KS F 2402<br>KS F 2421 | 배합이 다룰때마다<br>1일 2회 이상<br>습도가 급변하였을<br>시 1일 2회 이상  | 운반에 따라<br>슬럼프저하를<br>조정<br>위성전형 공<br>기 측정기에<br>따라도 좋음 |
| 경<br>화<br>콘<br>크<br>리<br>트      | 압축 강도<br>또는 휨강도             | KS F 2405<br>KS F 2408 | (1) 배합별 및 부위<br>에 따라<br>(2) 콘크리트량에 따<br>라<br>0~100m <sup>3</sup> 마.<br>50m <sup>3</sup> 마다<br>100~500m <sup>3</sup> ,<br>100m <sup>3</sup> 마다<br>500~1,000m <sup>3</sup> ,<br>150m <sup>3</sup> 마다<br>1,500m <sup>3</sup> 이상,<br>200m <sup>3</sup> 마다 |  |
| 플<br>랜<br>트                     | 계량기 눈금<br>검사                |                        | 아침 작업 개시 전  | 영점 검사와<br>침의 움직임<br>의 감도                             |
| 그<br>라<br>우<br>팅                | 콘시스턴스<br>블리딩<br>팽창율<br>압축강도 |                        | 5배치<br>1회 / 1일 (3개)<br>1회 / 1일 (3개)<br>1회 / 1일 (6개)   | 작업개시전에<br>비법에서 배<br>합을 결정한<br>다.                     |
| 시<br>멘<br>트<br>및<br>요<br>제<br>품 | KS에 정한<br>시험 종류             | 당해제품의<br>KS            | KS규정에 따라  | 공사감독 및<br>공사관리시험<br>상 필요할 때                          |

나. 흙

| 종별     | 시험종류  | 시험기준<br>및<br>규격                                  | 시험빈도   | 비고 |
|--------|---|--|--|----|
| 토<br>질 | 흙의 함수량<br>시험<br>다짐 시험<br>현장밀도시험<br>흙의 cone지<br>수 시험<br>흡입자의 비<br>중 시험 | KS F 2306<br>KS F 2312<br>KS F 2311<br>KS F 2308 | 공사 중 1회 / 1일<br>5,000m <sup>3</sup> 마다<br>500m <sup>3</sup> 마다<br>500m <sup>3</sup> 마다<br>500m <sup>3</sup> 마다 |    |

다. 아스팔트포장

| 종별               | 시험종류         | 시험기준<br>및<br>규격        | 시험빈도  | 비고               |
|------------------|--------------|------------------------|---|------------------|
| 아<br>스<br>팔<br>트 | 온도           |                        | 1시간에 1회이상   |                  |
| 골<br>재           | 입도<br>온도     | KS F 2502<br>KS F 2515 | 2회 / 1일 이상<br>1시간에 1회   | 가열 전<br>가열 후     |
| 혼<br>합<br>물      | 밀도<br>아스팔트함량 | KS F 2354              | 1000m <sup>2</sup> 에 1개 이<br>상<br>플랜트 1일 1개<br>포설후 1,000m <sup>2</sup><br>에 1개 이상 | 기준 밀도의<br>95% 이상 |

다음호에 계속